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72
------	-----

2019. 9. 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I .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8월 7일, 임종국 의원 외 9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9.9.2.) 상정, 검토보고, 의결(원안 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임종국 의원)

1. 제안이유

-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민·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 중인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 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제9조의2).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부칙상의 ‘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일자리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운영 현황

-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 정책과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15년 10월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이하 ‘조례’)가 제정되었음.
- 이 조례에 근거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일자리기본계획의 수립, 일자리 관련 사업의 지원, 고용촉진과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일자리 정책평가 등에 대한 심의·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제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¹⁾에서는 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가 존속할 명백한 사유가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없는 한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최소기간을 2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2년으로 부칙에 규정하였음.

- 위원회는 그 동안 경제·노동계, 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고용·노동·경제·사회 분야의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해 왔으나, 존속기한 만료일인 2017년 8월 11일부터는 결과적으로 법적 근거없이 위원회가 운영되었음.

<일자리위원회 추진 경과>

- 2015.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시장공약)
 -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추진('15.6월)
- 2015. 8월 제1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임기 : 30명, 2015.8.12.~2017.8.11.
- 2017. 8월 제2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임기 : 31명, 2017.8.12.~2019.8.11.

- 이에 따라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 위원의 자격, 회의 및 심사수당의 지급 등에 있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음.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그간 일자리위원회는 총 24회 개최되었으며(정기회의 10회, 실무회의 14회), 존속기한 만료 후에는 총 5회가 개최되었음.

<존속기한 만료 후 일자리위원회 회의 결과>

회의개최일	회의내용	비고
2018.3.29	- 2차 회의 결과 및 조치사항보고 - 2018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 분과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8.4.27	- 2018년 강소기업 지원 계획보고 - 2차회의논의 과제 건의	실무위원회
2018.5.17	- 2018 청년일자리 관련사업 추진 현황 -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제안, 향후 논의과제 건의	실무위원회
2018.6.8	- 사회적경제 일자리사업 보고 - 향후 분과회의과제 논의	실무위원회
2018.11.7	- 2019년 일자리 주요사업 - 2018 좋은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추진현황 - 서울지역 고용노동정책 추진전략	

- 위원회는 법적 기속력을 가지는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심의·자문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 논란을 피할 수 있으나, 단순 행정 실수로 법적 하자를 야기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가 요구됨.

다. 종합의견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원회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문기구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목적은 위원회의 남설과 방만한 운영을 제한하기 위한 것임.

- 이런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서울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도과되기 전에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했어야 하나 안이한 행정으로 이를 간과하였음.
- 개정안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 본문에 명시해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판단됨.
- 서울시는 차후에 행정적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위원회 제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원회 존속의 명백한 사유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종국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72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임종국, 김소양, 권수정,
최 선, 이동현, 김정태,
우형찬, 김상훈, 김소영,
권영희 의원 (10명)

1. 제안이유

-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민·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 중인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 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제9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